

언론의 무분별한 속보성 경쟁과 연예인의 인격권

신 순 철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교수

글에서 논의할 주제인 언론의 속보경쟁과 인격권 침해에 에들러 감을 무릅쓰고 극작가 코르네이유¹⁾의 <르 시드>라는 작품을 글머리에 소개하고자 한다. 과거 서구에서는 누군가에 의해 명예가 더럽혀진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면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목숨을 건 결투를 신청해야 했다. 그리고 결투결과에 따라 승자의 인격은 보호되고, 패자의 인격은 무참히 내동댕이쳐졌다. 사건의 진상이나 전후팩타야 어찌되었든 결투에서 이긴 자가 모든 권리와 정당성을 독점하는 승자독식(勝者獨食)의 형국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만일 갈등의 당사자 중 어느 한편이 도저히 무력으로 결투를 벌이기 불가능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단적으로 말해서, 명예를 훼손당한 주체가 노약자이고, 훼손을 가한 자가 우락부락한 투사라면 어떻게 하겠

느냐는 말이다. 그런 경우라면 애초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런 경우를 위한 대비책이 있었으니 바로 대리 결투이다. 즉,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결투에 임하고 싶지만 그것이 힘든 노인이나 여성은 자신을 위해 대신 싸워줄 다른 사람을 물색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대리로 싸워줄 사람을 물색하기 위해서는 돈이나 연줄을 동원해야 하니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란 여간 고달픈 일이 아니었다. 나중에는 전문적으로 업 삼아 대리결투에 나서는 자들이 생기고 했다는데 그들을 챔피언이라고 불렀다.

<르 시드>의 상황은 이렇다. 출중한 전투영웅 로드리고는 자신의 연로한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어느 백작에게 아버지를 대신하여 결투를 신청한다. 그런데 그 백작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약혼녀의 아버지이다. 사랑이나, 명예나

를 두고 다소 신파적인 고뇌와 갈등이 빚어진다. 비록 <르 시드> 극중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만 현실 세계에서 항상 만사가 순리대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만일 오늘날 누군가가 나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나도 무기를 들고 그에게 결투를 신청해야 하는가? 아니면 챔피언을 물색해야 하는가?

다행히도 오늘날의 대부분의 근대국가는 이러한 문제발생과 갈등폭발의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예견하고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놓고 있다. 법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각종 사회적 중재장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르 시드>의 경우처럼 강자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한 약자가 반드시 자신을 위해 대리전에 나서줄 누군가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1) Pierre Corneille, (1606~1684), 프랑스의 작가

라의 경우 법으로 규정하고 보호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인격권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닌건 인격침해의 소지가 있으면 위법이며 (형법 제307조 1항), 산 자와 죽은 자의 명예를 모두 존중하며 (형법 제308조), 대중매체를 통한 비방은 금지됨은 물론, 그 비방의 내용이 사실이건 허위이건 모두 위법이며 (형법 제309조), 과실로 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고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함 (민법 제750조, 제764조)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인격권의 침해와 관련된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제4부라 불릴 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언론이 종종 범하는 인격권 침해의 양상이 최근 들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왜 언론을 통한 인격권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것인가?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싶다.

첫 번째는 명예와 인격의 의미를 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명예는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

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은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주관적 감정으로 명예감이 침해되었다는 주장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명예의 정확한 의미를 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두 번째는 상당성의 원리와 위법성조각사유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어도

적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럴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언론계의 뿌리 깊은 취재편의주의를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두 번째 문제점인 위법성조각사유가 세 번째 문제점인 취재편의주의와 결탁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혹은 어찌면 이미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먼저 언론계에 만연한 취재편의주의에 대해 생각해보자.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이
종종 범하는 인격권 침해 양상이
최근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취재편의주의와 속보성 경쟁

어느 언론인을 막론하고 선망하는 것이 바로 특종을 낚는 것이다. 동시에 어느 언론인을 막론하고 피하고 싶은 것은 낙종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언론계에서는 위협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자 풀(pool)제도³⁾를 운영한다든지, 경쟁 신문사의 가판을 보고 서둘러 기사를 채워 낙종을 피한다든지 하는 관행이 여전히 있다. 이것은 과거 언론매체의 종류와 접근이 제한적이던 상황에서는 일정부분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매체환경이 급격히 변한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할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오로지 공공의 목적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형법 309조의 비방할 목적은 그 폭을 제한하여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이른바 상당성의 원리이다.²⁾ 따라서 결과

2) 헌재 1999, 6. 24.선고, 97헌마265.

3) 과거에는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기자 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간섭이 사라진 이후에도 언론계는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 기자 풀을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늘날에는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 다. 하지만 작금 우리의 언론이 뉴스 전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자.

TV 뉴스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사건을 퍼 나르기에 바쁘다.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지하철 결혼식” 사건이 단적인 예이다. 몇몇 연극전공 대학생들이 지하철 안에서 마치 실재인 것처럼 결혼식을 연출했고, 그 장면이 누군가에 의해 촬영되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인터넷에서 이 사건이 화제가 되자 우리나라의 대부분 공중과 방송의 저녁종합뉴스에는 이 장면이 방송되었다. 인터넷에 회자되는 내용과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과 동영상에 취재내용의 전부였을 뿐 충분한 사실 확인은 생략되었다. 다음날 어느 방송사에서 후속 취재를 시도했고, 그 결과 언급임이 밝혀졌지만 그 방송사도 전날 저녁종합뉴스에서는 결혼식이 마치 사실인양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속보를 중요시하고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는 취재편의주의가 부른 오보였던 것이다.

근래에는 공중파의 낮방송 시간이 늘어나면서 공중파 방송사들은 부족한 콘텐츠를 마련하고, 시의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낮에도 종합뉴스 포맷의 보도 프로그램 편성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인터넷의 화제나 이미 보도된 사안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을 소개하는 꼭지를 순서로 마련하고 있다

는 것이다. 방송은 속보성 측면에서 보자면 인터넷에 비해서는 불리하다. 아울러 방송은 그 매체의 성격상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조되는 매체이다. 반면 인터넷은 속보성과 공익성 측면에서 방송보다 유리하다. 방송은 속보성의 한계와 표현의 제약을 인터넷에 의지하여 그 내용을 퍼 날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신문도 마찬가지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신문은 공식적으로 하루에 한번 발행된다. 그리고 취재, 편집, 제작, 배포과정에서 수많은 인력과 물리적 제약을 받는다. 그러니 생득적으로 불리한 속보성에 집착하는 것 보다는 다른 매체에 비해 신문만이 지닌 장점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심층취재나 탐사보도 같은 것 말이다. 그런데 여전히 신문사에서 특종보도를 중요시하고 있다. 서울시내 고층건물 위를 점하고 있는 신문사들의 뉴스전광판과 어느 신문사나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판(版)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언론사들이 습관적으로 기사표절, 오보, 혹은 인격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낳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속보성 경쟁에서 찾을 수 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모두 속보성 경쟁을 벌이다 보니 심층취재나 탐사보도는 찾기 어렵고, 취재과정을 단축시키고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취재편의주의가 만연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명예나 인격권에 대한 배려는 점차 입지를 잃고 있다.

뉴스가치와 이슈가치의 혼동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 혹은 제4부로 불리는 이유는 언론을 통해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여론의 형성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은 우선 그 사회에서 논의되고 중지를 모아야 할 이슈들을 발굴해야 하고, 그것을 공론의 장으로 불러내고, 때로는 스스로 그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때 마땅히 공론되어야 할 의제의 중요도를 이슈 가치(issue value)라 한다. 문제는 이슈 가치를 발굴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가치 있는 이슈는 늘 숨겨져 있고, 부각되지 못하고, 무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온당 그러려니 하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장기적이고, 누적적이고, 간접적인 요인들까지 면밀히 파고들어야 이슈 발굴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슈 가치가 있는 의제는 단순히 뉴스 가치만이 있는 의제에 비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흥미도 떨어질 뿐 아니라 시의성면에 있어서도 대중의 시선을 즉각적으로 끌어들이는 매력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 언론은 가치 있는 이슈를 발굴하기 보다는 가치 있는 뉴스를 발굴하고자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슈 가치를 뉴스

가치(news value)와 맞바꾸는 것이다. 뉴스 가치는 그것이 이슈로서 가치가 있건 없건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설사 보도 내용과 사실과 어긋난다 해도 “아니면 그만”으로 넘어갈만한 뉴스거리로 의미한다. 시의성이 중요한 뉴스 가치를 전달함에 있어서 속보성 경쟁은 필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속보성 경쟁은 당연히 취재편의주의와 면밀하지 못한 보도로 인해 오보, 명예훼손, 사실 왜곡으로 연결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낳게 된다. 설사 추후에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낸다 하더라도 애초 성급하게 보도된 내용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늘 부족하다. 이슈 가치가 뉴스 가치와 전복되는 중심에 연예인들이 있다.

연예인 공인(公人)만들기

이슈 가치를 뉴스 가치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연예인을 공인의 반열에 놓고, 연예인에 대한 보도를 공인에 대한 보도로 위장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 맥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예인 당사자와 대중에게 연예인도 공인이라는 통념을 자연스럽게 심어

야 한다. 연예인에 대한 보도, 특히 속보성 경쟁을 발판으로 전달되는 보도는 이슈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그들을 공인으로 격상시켜 상당성의 원리를 내세우기에 용이하다. 시민에게도 마치 연예인을 공인처럼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은 강박증을 갖게 한다. 연예인의 추문을 다룬 기사가 공인의 추문을 다룬 기사의 뉴스가치가

언론은 취재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유명인과 공인을 의도적으로 혼동시켜 자신들의 취재에 용이하게 이용해

이슈가치를 지닌 것으로 위장한다. 하지만 연예인이 공인인가? 그렇지 않다.

연예인이 공인이 아닌 이유를 들어보자. 공인의 사전적 의미는 ① 국가나 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 ② 공직에 있는 사람이다.⁴⁾ 이러한 공인들에게는 일반인보다 조금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들의 직무수행과 관

련하여 이러한 도덕심이 그 평가의 잣대가 되기도 한다. 언론에서 종종 공인이라 부르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는 유명인이라 칭함이 옳다. 언론은 취재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유명인(celebrity)과 공인(public figure)을 의도적으로 혼동하도록 하여 자신들의 취재에 용이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이 연예인을 공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떻게 취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일까? 우리의 법원은 명예소송에 있어 비록 공인에 대한 고려는 있지만 한국 법원은 아직 공인에 대하여 기능적인 용어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도 원고가 공인인지 아닌지 여부보다는 명예훼손적 연사가 진실인지 아닌지의 진실성 여부와 공익과 관련되었는지 아닌지의 공익성 여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

대법원판례를 보자면, 사건에서 공공성, 진실성, 상당성의 기준을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제시하고 있다.⁶⁾ 결론적으로 공인의 기준이 법적으로 모호하고, 공공성, 진실성, 상당성의 기준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우리의 언론은 연예

4) 이희승 감수, 민중서림 엡센스 국어사전

5) 이재진(1999, 여름), 명예훼손법상의 공인과 언론에 나타난 공인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3-4, pp.161-162.

6)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인을 공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그것이 공공성과 상당성의 요건을 갖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진실성의 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면 책임을 피하기도 한다.

공인은 그 자체로 관심의 대상이므로 공인 아닌 사람을 취재했을 때 보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 공산이 크다. 가수나 배우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같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같은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공인의 경우는 그러한 추문은 즉각 도덕적 평가로 연결되며 법 이외의 도의적 책임이 필요하게 된다. 언론보도에 있어서도 공인에 대한 보도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도에 비해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인격침해 논란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나 상당성의 원리에 해당될 공산이 크다.

언론은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는 연예인들에게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거의 강제로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낱낱이 공개한다. 사생활 공개로 뉴스 가치를 발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들의 사생활을 조작하기도 한다. 연예인과 그들을 관리하는 기획사도 이 점을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유는 물론 언론이 자신들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까닭도 있지만, 그들도 소위 스타 시스템을 통해 유명인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언론과 일정부분 공조한 까닭도 있다. 즉,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을 소위 “떠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생활을 조작한다. 나아가 성형수술은 기본이고, 온갖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상업적으로 신비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언론과 일정부분 상호협조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필요에 따라 연예인을 공인으로 칭하면서 온갖 인격침해를 가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이것이 언론의 정도에서 벗어난 취재관행에 면죄부를 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연예인은 공

인이 아니지만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이기 때문이다.

〈사례〉 영화배우 이은주 씨 자살보도를 통해본 언론의 인격침해

얼마 전 사망 1주기를 맞은 영화배우 이은주 씨의 경우에도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니었다. 먼저 사건이 발발하자마자 대부분의 언론에서 “영화배우 이은주 자살”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그때는 자살로 추정되는 정황이 많았을 뿐 분명히 자살로 단정할만한 시점이 아니었다. “유서를 남기고 사체로 발견”이라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은가?

결과적으로 이은주 씨의 사인은 수사결과 자살로 판명이 되었으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한국 자살예방협회,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자살관련 보도를 지양하기 위해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기준’⁷⁾을 제정하였

7)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자살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에 권고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2. 언론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4.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해서는 곤란합니다.
5.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 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출처: 한국자살예방협회 <http://www.mohw.go.kr/suicide/suicide.htm>)

다. 이 권고에서는 흥미를 유발하려는 접근이나 속보나 특종 경쟁의 수단 배제 등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은 정확한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편의에 따라 속보경쟁에 집중했다. 온갖 추측성 기사와 오보를 양산하기도 했으며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기사들을 남발하기도 했다. 출처와 사실 여부가 불확실한 “지인”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온라인에 오르내렸고, 신문과 방송은 열심히 그 내용을 퍼나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공중과 3사가 모두 편성하고 있는 연예정보 프로그램은 이러한 퍼나르기의 대표적 창구가 되었다.

자살동기를 두고 모 가수와의 염문설, 영화홍행의 참패에 따른 좌절, 심지어는 동성애로 인한 고민을 암시하는 내용이 제기되었고, 그 내용이 옳다 그르다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죽은 자의 명복과 그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그가 출연한 영화 속의 특정 장면과 결부하여 사진에 자살이 예견되었다는 황당한 내용도 있었다. 어느 한 언론사가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면 사실 확인 없이 줄줄이 보도가 나갔고, 인터넷 매체의 경우 기사가 떴다

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거기에 일부 네티즌의 악성 댓글과 추측이 가미되면서 망자(亡者)의 인격은 무참히 유린되고 유가족이 자제를 당부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맺음말: 언론은 스스로
공기(公器)임을 잊지 말아야**

많은 사람이 잘 아는 인물이 언

**언론의 자유가 신장된 만큼
그에 걸맞는 사회 ‘공기(空氣)’
로서의 책임과 의무 다 해야**

제나 공인은 아니다. 따라서 유명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언론의 접근이 공인 수준으로 개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죽은 자의 명예라고 해서 산 자의 명예보다 경솔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실정법에 나타나있다. 죽은 연예인인 이은주 씨의 보도에서는 뉴스 가치와 속보성 경쟁과 근거 없는 내용을 퍼나르기가 횡행했고 그 점에서 <르 시

드>에서처럼 약자와 소수자는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참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분명히 짚어야 할 사항은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지만 신문사는 사회의 공기(公器)라는 점이다. 연예인들에게 “공인”다운 도덕심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신문사에 “공기”다운 도덕심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신문윤리”라고 부르고, 각 신문사들의 연합체인 신문협회에서 “윤리강령”이란 걸 제정하여 지키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만을 의미한다”라는 어느 외국 비평가의 촌철살인은 오늘날 우리 언론환경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언론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대통령을 빨갱이라 해도 그 다음날 남산 지하실에서 치도곤을 당하는 일이 없을 만큼 우리의 언론은 자유롭다. 얼마 전 <국경없는 기자회견>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도는 미국보다도 높다.⁸⁾

이제 그만한 자유에 걸 맞는 책임이 있는가? 언론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가 혹시 언론사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

8)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87979